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Member of Canberra Accord



UNESCO - UIA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부.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안

1. KAAB 인증기준 개정 배경
2. 추진일정
3.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4.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안 세부 내용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1. KAAB 인증기준 개정 배경

KAAB 인증규준 개정 배경

➤ KAAB 인증규준 개정 절차

1. 2005년 최초 인증규준 제정
2. 이후 인증규준(기준 + 절차)은 매 5년 마다 개정
3. 2010년 개정 인증규준 마련
4. 차기 인증규준 개정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및 심사” 과정 중에서 인증규준 개정이 요구되어 “KAAB 2012 인증규준 개정안”을 마련함

KAAB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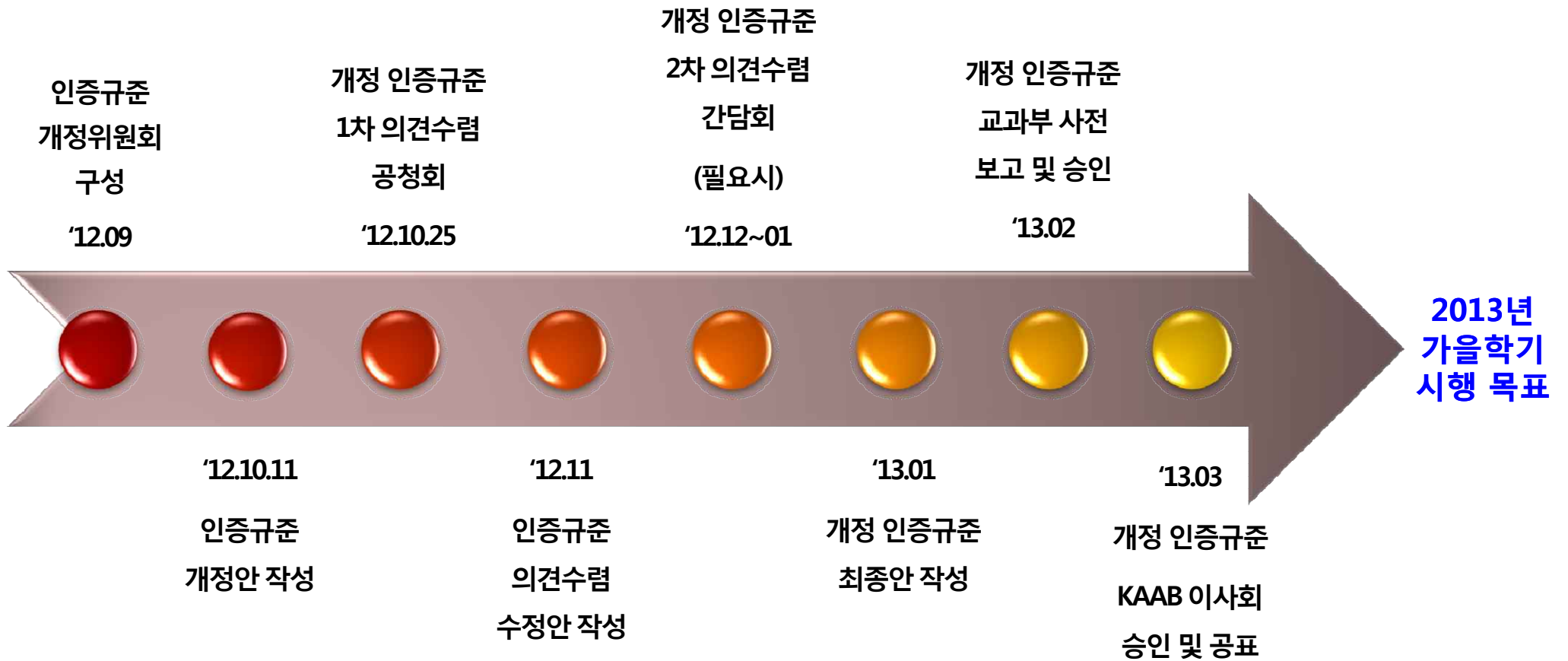
➤ KAAB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구성

관련 단체 명	단체 추천 대표위원 명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위원장 1. 최재필 (서울대학교) 2. 이장범 (선문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KIRA)	3. 이근창 (엠앤디이 종합건축) 4. 전영철 (열린모임참 건축)
대한건축학회 (AIK)	5. 박경립 (강원대학교) 6. 유길준 (동아대학교) 7. 이강훈 (충북대학교)
한국건축가협회 (KIA)	8. 김동훈 (진우 종합건축) 9.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KACSA)	10. 신재억 (울산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 세부과제 책임연구원	이준석 (명지대학교)

2. 추진일정

추진 일정

➤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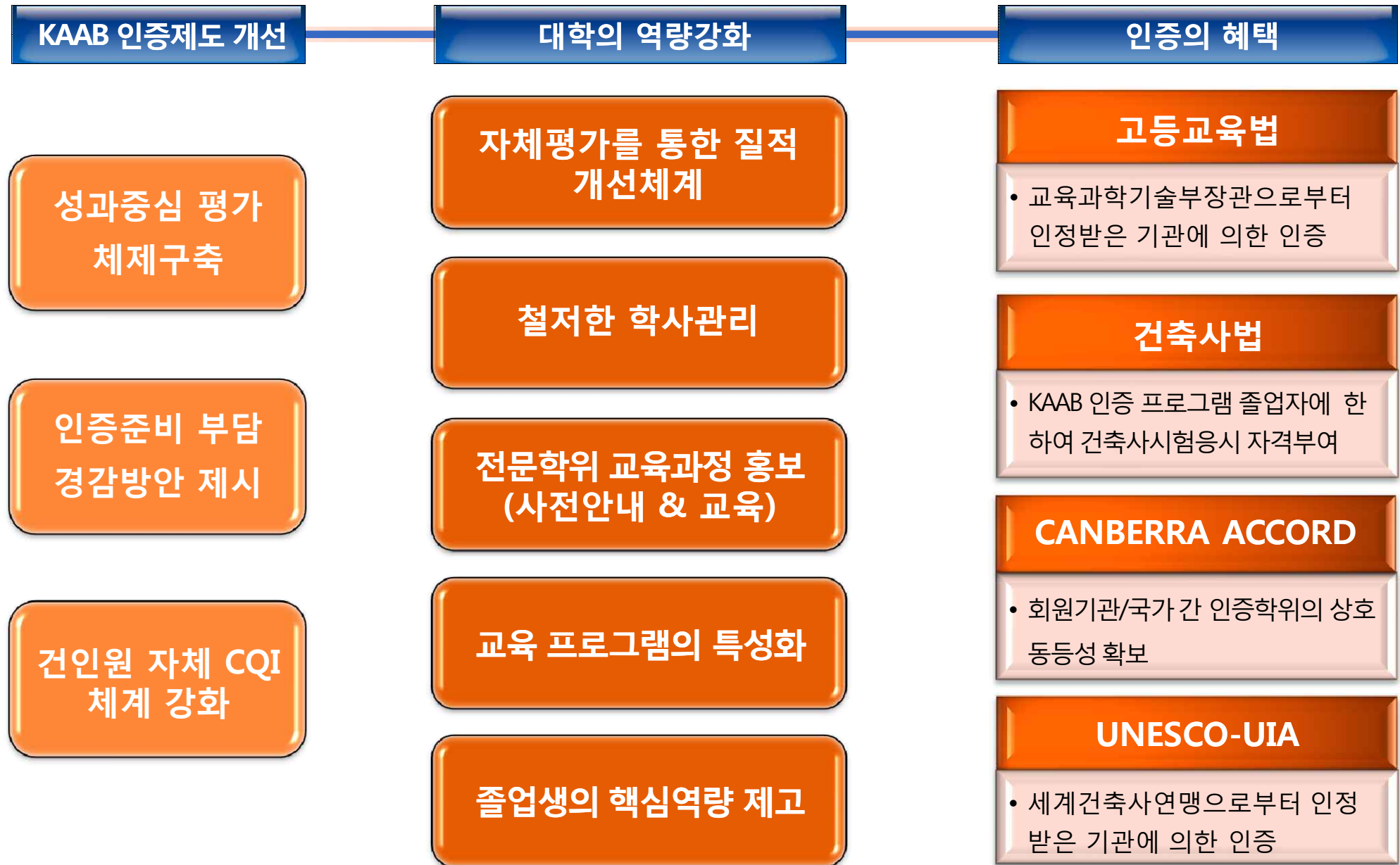
3.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 심사 보완항목

- 1 **인증기준 관련 자료,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성, 통일성 측면에서 재정비, 추상적 용어의 객관화**
- 2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하면서도 한국 교육현실을 고려한 평가기준 수립
- 3 **인증기준의 개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4 건인원의 평가·인증이 건축학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는지 조사·분석한 실적
- 5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계획
- 6 평가위원 풀의 효율적 운영 방안
- 7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 8 사무국 인력 확보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9 **평가 준비과정에서 대학의 부담 경감 방안**
- 10 인증기준 개정시기의 유연성 확보 방안
- 11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1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비적응자를 위한 구제 방안
- 13 **편입생 관리의 최소 기준 등을 인증기준에 명시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14 각종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
- 15 **평가등급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 16 **인증위원회 조율 기준과 절차**
- 17 **인증후보자격 신청과 인증신청 심사 시 ‘반려’에 대한 명문화된 판단기준**
- 18 프로그램별 PD 및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및 반영실적
- 19 관련기관 담당자, 건인원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견, 재정확보계획 등을 반영한 평가·인증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 20 **과정이나 투입과 관련된 평가항목 중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 제외**
- 21 **권고’ 사항 중 건축학인증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권고는 제외**
- 22 평가·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 활용도 제고 방안
- 23 교과부 이외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건의활동
- 24 기타 1 - 건축사법 시행 이전/이후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자 구제방안 - **추가대응항목**
- 25 기타 2 - 인증수수료 경감방안 - **추가대응항목**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 KAAB 인증기준 개정 방향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KAAB 인증기준(인증기준 + 인증절차) 보완사항에 따른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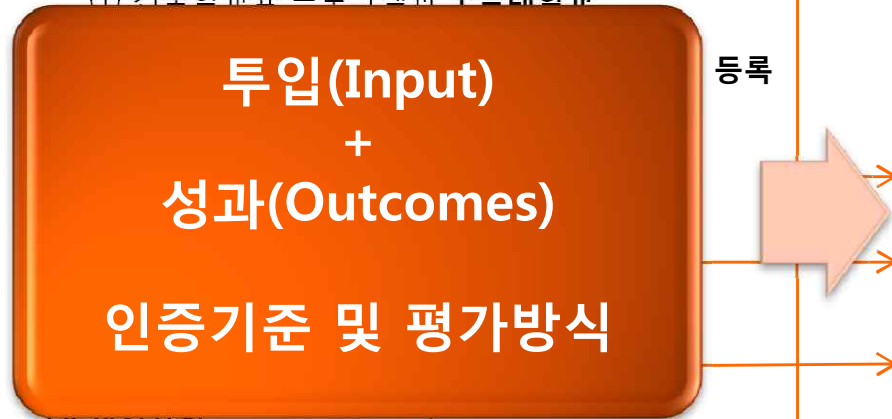
KAAB 2010 인증기준

1. 건인원 소개 및 인증절차 개관

2. 인증기준

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 관점

(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



2.8 새정사원

2.9 연구활동

2.10 학생수행평가기준(SPC)

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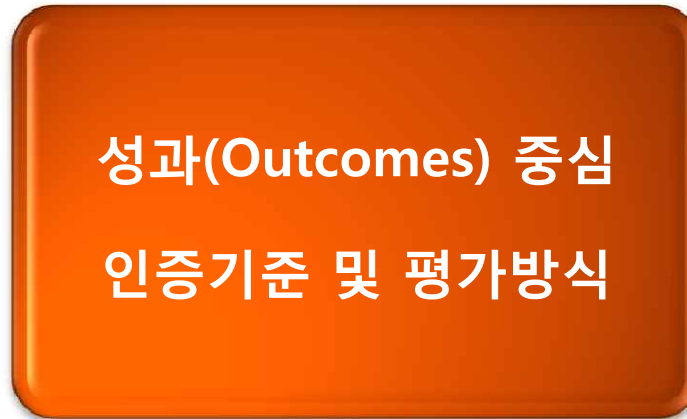
4. 인증절차

▣ 인증지침서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건인원이 추구하는 인재상 설정

졸업 시까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Part 1, 2, 3로 구분하여 명료화



SPC 37개 -> 31개로 축소

✓프로그램의 부담 최소화

✓교육의 자율성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유도

인증 준비에 부담을 주는 절차/항목 삭제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기준

✓인증의 종류(기간) 심사지침

✓학사운영 및 관리지침 등 제시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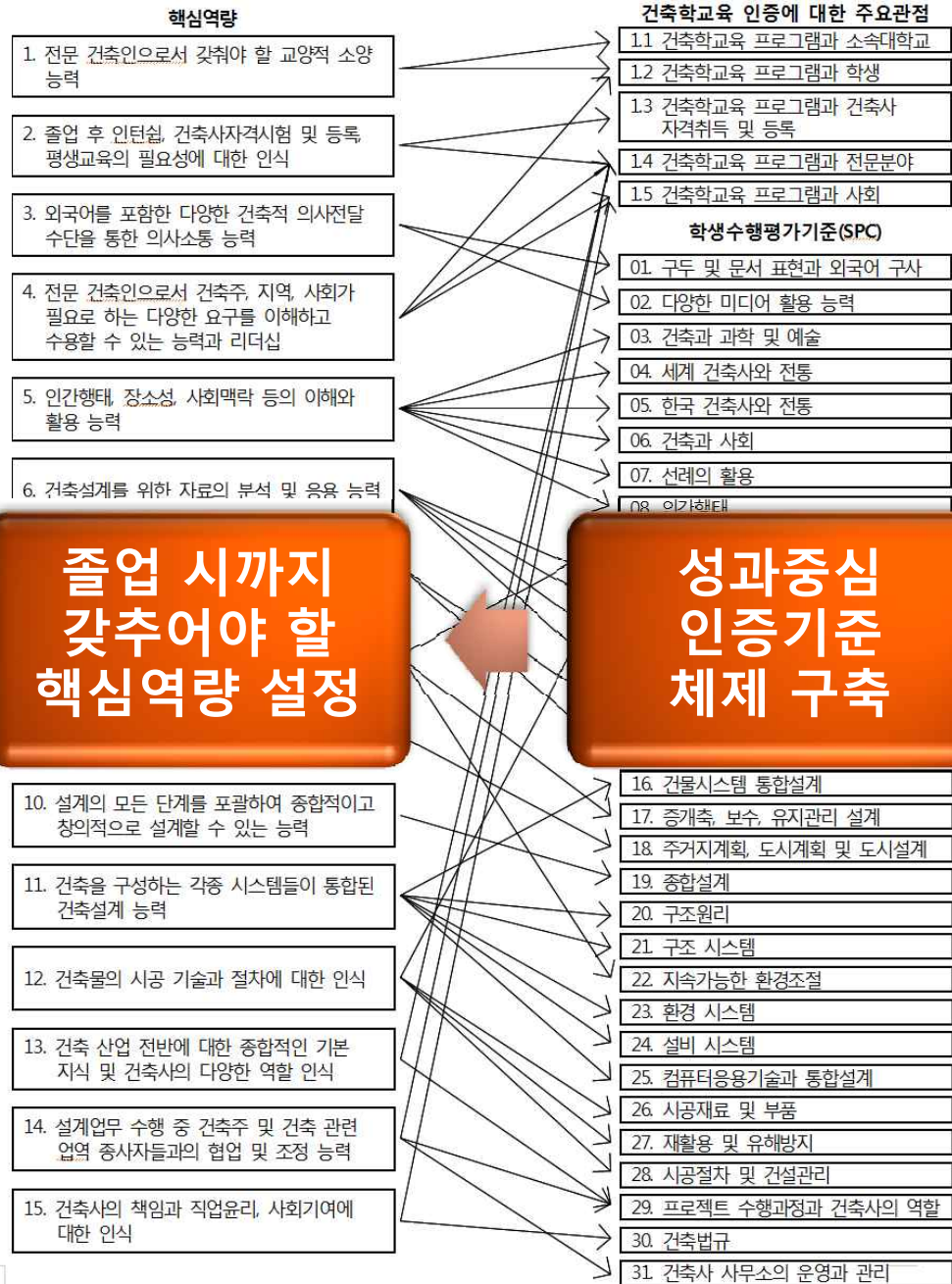
➤ 인증기준과 핵심역량, 인재상과의 체계구축

인증제도가
 건축설계의 전
 구조의 이해를
 윤리성, 그리고
 국제수준의 건축인력 양성

**KAAB
 인재상 제시**

**졸업 시까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설정**

**성과중심
 인증기준
 체제 구축**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규정 보완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 대학의 인증준비 부담경감 방안

대학의 인증준비 부담 경감방안

학생수행평가기준

투입관련 정량 기준

인증실사 준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평가방식-사전평가 항목

미 인증 프로그램

인증 수수료

학사운영 관리지침

37개 기준 -> 31개로 축소

- 교육의 자율성 / 특성화 강화

정량적 기준 항목 삭제

-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설계수업 개인지도시간 1주/40분
- 물리적 자원
개인 1자리 확보 및 24시 사용
- 정보자원
건축전문서적 최소 5000종 이상

학생성과물 전시내용/방식의 간소화

- 재출력 금지/전시패널 최소화 등

불필요한 정보 작성 항목 삭제

- 인증실사 현장에서 확인

성과중심 방문 평가방식으로 전환

미 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마련

- 간담회 등을 통한 인증준비 자문

인증수수료 경감 계획 마련

- KAAB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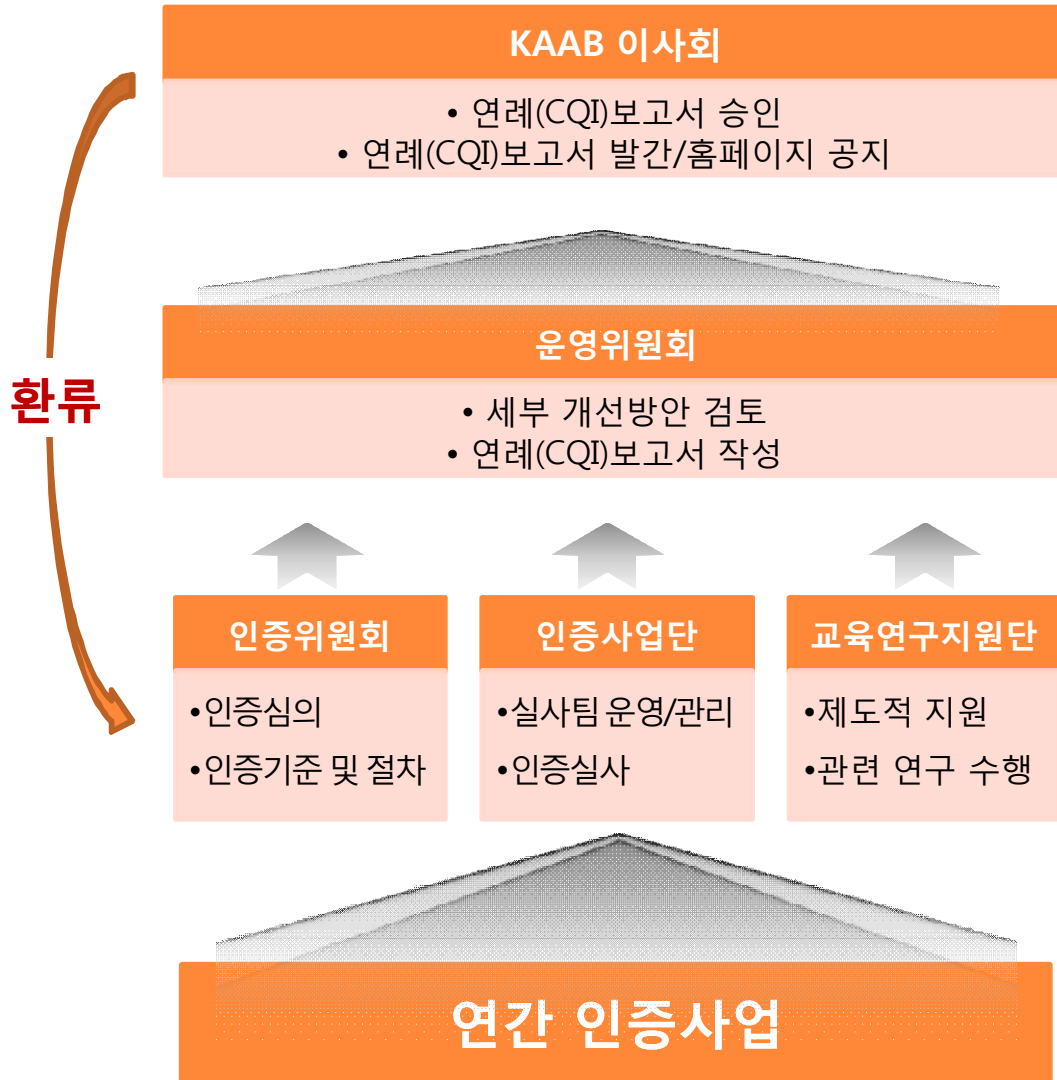
학사운영 관리지침 제시

- 편입/전과학생 규정 등
-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KAAB 인증제도 질 관리 체계 강화방안

KAAB 자체 CQI



국내외 외부기관평가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 인정기관 지정(예정)
- 인정기관 평가**
- 평가주기 5년

Canberra Accord

- 2008년 정회원 자격 취득
- 회원기관 Peer-review 평가**
- 평가주기 6년

UNESCO-UIA

- 2009년 인정기관 지정
- 인정기관 평가**
- 평가주기 5년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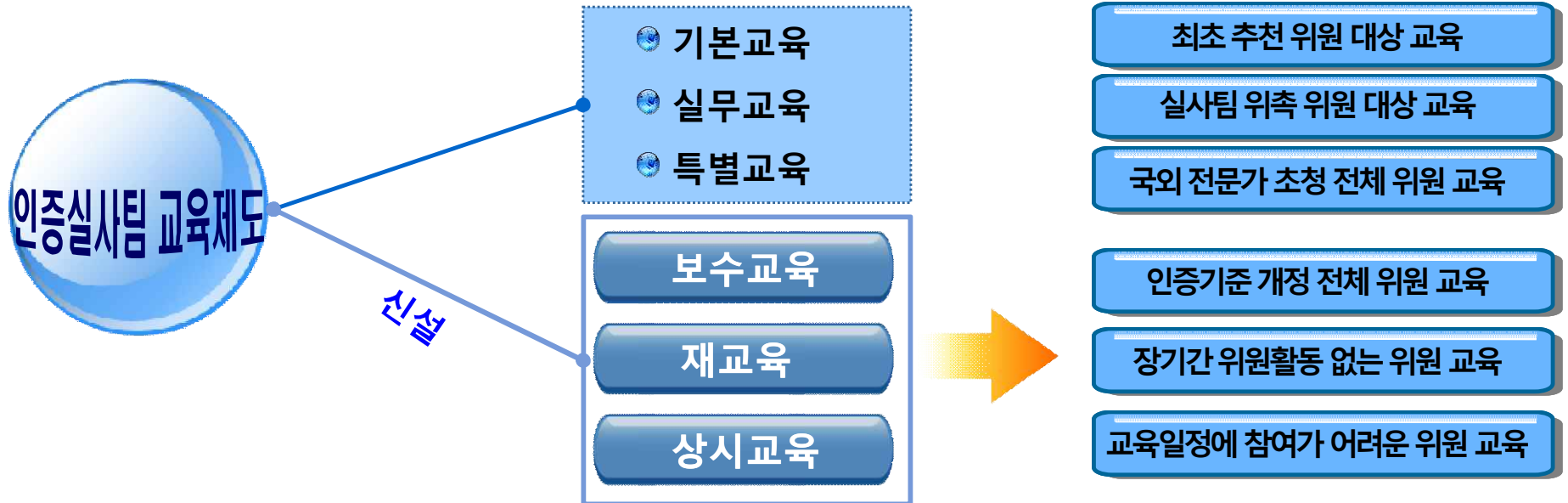
- 2005년 법인설립 인허가
- 관리감독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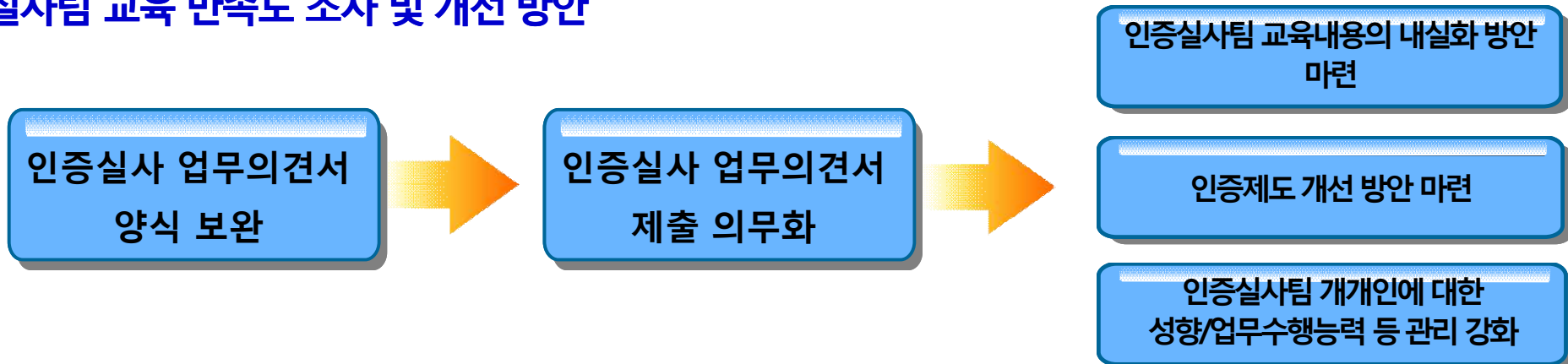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 방향

➤ 평가위원 운영, 관리 개선방안

1. 인증실사팀 교육제도 관련규정 보완



2. 인증실사팀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4. KAAB 2012 인증기준 개정안 세부 내용

인증기준 관련 자료,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성, 통일성 측면에서 재정비, 추상적 용어의 객관화

대학과 대학원의 인증후보
신청 자격 형평성

4.1.1 인증후보자격 신청

... 프로그램 개설 이후 학부의 경우 최소 3년, 대학원의 경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증후보/인증 신청 반려
심사 기준

인증기준 “인증심사지침”에 심사기준 명시. - 자료 16 page ~

인증기간의 중요 부족사항
명시

1. 인증기준, 인증기준, 인증절차
2. 인증심의/ 인증심사/ 평가/ 검토
3. 거부/ 반려
4. 교과과정/ 교육과정
5. 피 인증실사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6. 인증원/ 건인원
7. 인증계속/인증연장/계속인증
8. 방문평가/인증실사/현장실사 외

1. 인증기준과 인증절차를 인증
기준으로 정의
2.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인증심
의로 변경
3. 거부를 반려로 통일
4. 교과과정으로 통일
5. 신청 프로그램으로 통일
6. 건인원으로 통일
7. 계속인증으로 통일
8. 인증실사로 통일

※ 인증기준 용어집 작성 - 부록

용어의 일관성 통일성 확보

기타 추상적 용어의 객관화

법률/교육학 전문가 자문

적정한, 적절하게, 충분하게, 권장, 권고 등의 용어 삭제.

평가 준비과정에서 대학의 부담 경감 방안

➤ 평가 준비과정에서 대학의 부담 경감 방안

- 1. 학생성과물 전시 방법의 간소화
- 2. 정량적 기준을 삭제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기준으로 개정
- 3. 학사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학생성과물

일반과목 전시의 경우
주의사항

- 해당 교과목 인증파일, 시험지 및 답안, 리포트 등은 전시를 위한 개별 패널을 제작하지 않고 실물자료 전수 비치
- 전체 교과목의 통과 SPC를 보여주는 도표만 전시

교수 성과물

- 실사팀작업실 내 또는 인근에 전체교수진의 주요약력 및 실적에 대한 개별 패널을 제작하지 않고 전시,
- 개별 교수의 설계업적, 논문, 저서 등은 자율적으로 비치

정량적 기준

- 4.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기준에서 삭제하고 실사팀 지침서 활용
- 5. 물리적 자원 기준에서 삭제하고 실사팀 지침서 활용
- 6. 정보자원 기준에서 삭제하고 실사팀 지침서 활용

학사운영 및 관리지침

- 학사운영 및 관리지침을 인증기준의 인증지침서에 작성하여 제시
- 1. 설계 교과목의 중복수강 및 선 이수체계
- 2. 계절학기 설계 스튜디오 운영지침
- 3. 학사관리 체계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한국 교육현실을 고려한 평가기준 수립

➤ 주요 개정 내용 - 5년제 이상 인증 학위에 대한 정의 - 자료 4 page

기존안	개선안
<p>2.2 학위 및 교과과정</p> <p>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재학생(편입/전과 등 학생 포함)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p> <p>특히, 편입/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에 대해 해당 이수 과목/시수가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2.2 학위 및 교과과정</p> <p>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재학생(편입/전과 등 학생 포함)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p> <p>특히, 편입/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에 대해 해당 이수 과목/시수가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건인원이 인증 대상으로 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은 졸업 후 예비건축사로서 건축사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건축사업 무 실무수련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4년제 고등교육과정 수준의 교육 이외에도 건축 전문인으로서 갖춰야할 소양과 전문직 수행 및 업무개설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각 학위의 교과과정은 전공교육, 선택 및 일반교양 교육 등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간의 전일제 고등교육을 필한 자의 수준에 부여되는 학위여야 한다.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명: 건축학사, 영문: Bachelor of Architecture (BArch) ▪ 학위명: 건축학석사, 영문: Master of Architecture (MArch) <p>1) 캔버리어코드 Rules and Procedures, 2009, 1.3.h 항</p>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체계 강조 – 자료 7 page

Part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에 대한 인증기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체 계 강조

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에 대한 인증기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편입생 관리의 최소 기준 등을 인증기준에 명시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주요 개정 내용 : 편입/전과 학생 관리규정 보완 – 자료 8 page

1. 인증기준 “2.3 학위 및 교과과정”

교과과정 이수체계에 대한 도표 및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2. 인증기준 “2.10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생(편입/전과 학생 등 포함)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편입/전과생 관리규정을
인증기준과
인증지침서를 통해
명료화하여 제시

2. 학위 및 교과과정

- 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재학생(편입/전과 등 학생 포함)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특히, 편입/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에 대해 해당 이수 과목/시수가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인적자원항목을 성과중심 평가 기준으로 보완 - 자료 9 page ~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전임교원,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교직원, 보조 직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행정 관리직, 도서사서 등이 필요하며 건축CAD 실, 모형제작 실 등에 상시 근무하는 지원인력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시간과 전문적 개발을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총 수업부담이 정해져야 한다. 실무와 관계된 과목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교수들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교육자격을 갖춘 건축사들이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설계 스튜디오의 교수진은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1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건축학교육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물리적 자원항목을 성과중심 평가 기준으로 보완 - 자료 10 page ~**

물리적 자원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건축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설계 스튜디오 : 소 스튜디오로 분할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을 권장하며, 이용 시간 동안 냉난방이 지원되는 구조
- 학생 개인자리 및 락커 :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개인자리 및 개인 락커

프로그램은 학생의 효율적인 건축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 스튜디오 수업과 개인작업이 가능한 공간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정보자원항목을 성과중심 평가 기준으로 보완 - 자료 10 page ~

정보 자원

정보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 분야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중앙도서관 혹은 독립적 도서관 자료는 인쇄, 시각,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하며 그 규모, 범위, 내용, 최신자료, 과거자료, 활용성 등이 건축에 있어서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에 적절해야 한다.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분류번호 540, 610) 또는 DDC(분류번호 690, 710, 720)로 분류되고 개별적 도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건축전문 서적이 최소 5,000종 이상이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 자료와 기타 비서적 자료들은 전체 건축학교육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정보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 분야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평가요소가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 마련

자료 16 page ~

인증후보자격/인증신청 심사기준 인증의 종류(기간) 심사지침

기존의 인증기준과 평가방식, 평가 결과에서도 자원항목의 부족이 판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규정이나 지침으로 제시하지 않음

인증후보자격/인증신청 심사기준 마련

▪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기준의 “반려항목”에서 자원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주의를 요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시

인증의 종류(기간) 심사지침 마련

▪ 인증의 종류(기간) 심사지침을 통해 자원관련 항목의 부족으로 3년 인증을 판정할 수 없음을 명시

➤ 주요 개정 내용 : 학사운영/ 관리지침 제시

자료 16 page ~

1.3 학사운영 및 관리지침<신설>



학사관리체계

모든 재학생(편입/전과 등 학생 포함)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심사결과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선택 교과목 운영으로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학생개개인을 대상으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학생수행평가기준간의 상관관계 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 학생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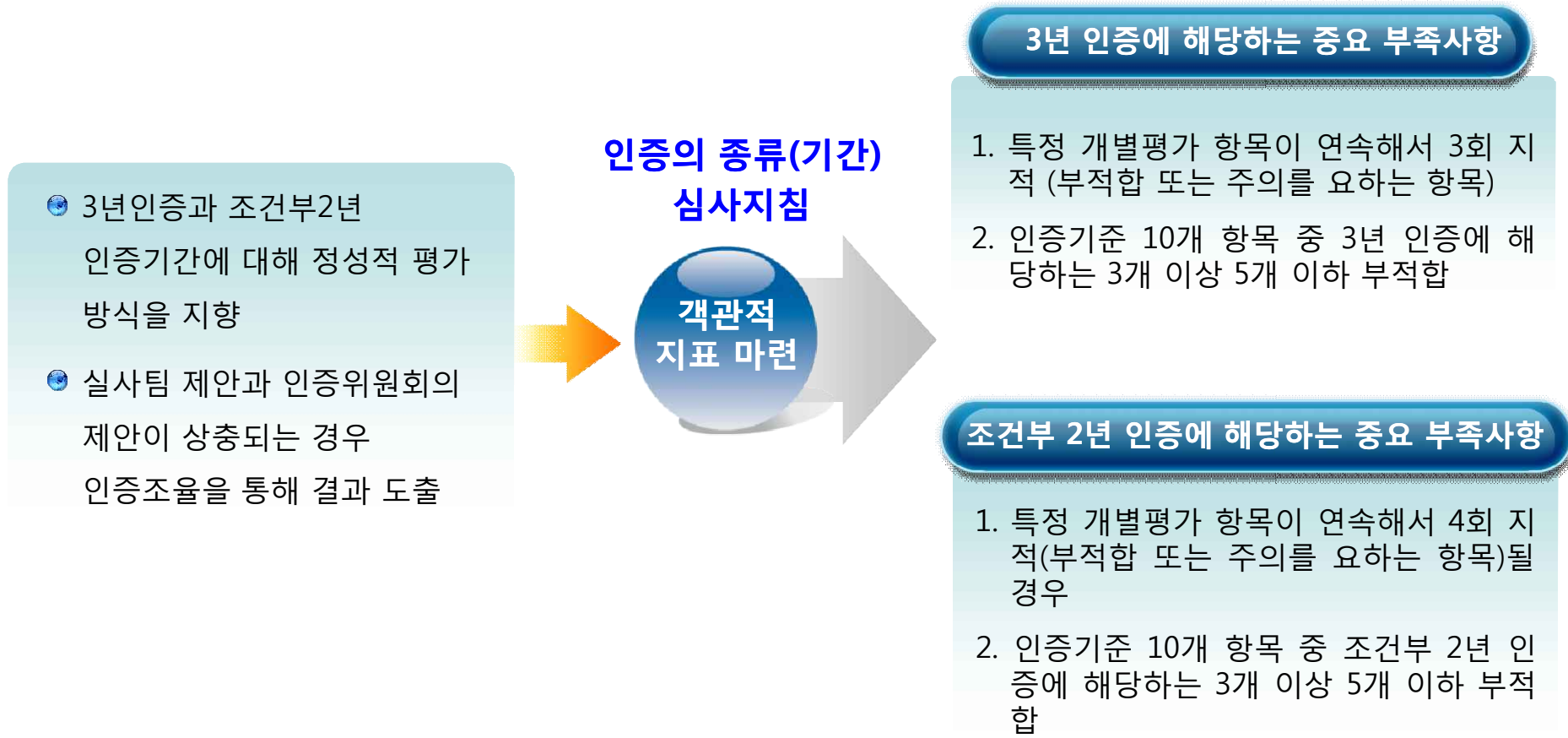
선택과목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다가 필수과목 교과과정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선택과목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년/학생 역시 개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과목이 선택에서 필수 또는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거나, 폐강 혹은 신설되는 경우에도 대체과목 지정 및 교육내용 보완 등의 방법으로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편입/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에 대해 해당 이수 과목/시수가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평가등급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 2. 실사팀 : 인증의 종류(기간) 판단을 위한 심사지침 – 자료 page 17 참조



➤ 3. 관련 실사팀 교육자료 보완

- 상기의 평가등급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실사팀 실무교육 자료 보완

평가등급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 4. 3년 인증의 재심(이의제기) 신청

기존안	개선안
<p>4.4.7 재심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인원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재심신청은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건인원 또는 실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재심 요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p>	<p>4.4.7 재심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인원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재심신청은 3년 인증<신설>,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건인원 또는 실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재심 요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p>

재심(이의제기) 신청

3년 인증 <신설>,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
인증거부

인증위원회 조율 기준과 절차

➤ 1. 인증최종심의

4.4.6 인증 결정

- (1) 인증최종심의
- (2) 인증의 종류(기간)
- (3) 인증의 조율 <신설>
- (4) 이사회 인증최종결과 인준

인증위원회는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최종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
이사회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 결과를 인준

실사팀에 의한 인증결과와 인증위원회의 인증결과가 다른 경우 즉, 인증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사회에 중재요청

2. 인증조율의 기준 및 절차

4.4.6 인증 결정

- (1) 인증최종심의
- (2) 인증의 종류(기간)
- (3) 인증의 조율 <신설>
- (4) 이사회 인증최종결과 인준

이사회 중재 절차

-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을 중재인으로 선정, 중재인은 중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
- 인증위원회 대표와 해당 인증실사팀장이 참석, 중재인이 회의를 주관
- 중재인은 회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이사회는 최종 결정심의
- 이사회에 의한 중재는 중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이사회의 인증최종결과 인준

4.4.6 인증 결정

- (1) 인증최종심의
- (2) 인증의 종류(기간)
- (3) 인증의 조율 <신설>
- (4) 이사회 인증최종결과 인준

- 실사팀의 인증제안서 결과와 인증위원회의 인증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이사회 중재요청 건은 중재절차에 의해 이사회가 최종결정하고 인증결과를 해당 프로그램에 통보
- 이사회의 중재결론은 최종 결론이고 해당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동등한 결속력이 있다.

인증후보자격 신청과 인증신청 심사 시 '반려' 에 대한 명문화된 판단기준

➤ 인증후보자격 / 인증신청 심사기준

자료 16 page ~

구분	인증후보자격신청	인증신청
반려 항목	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대학 내에서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를 요하 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자원의 전공도서 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스튜디오 개인자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학기별 학생 개인의 설계 교과목 최소 지도시간(40분/주) 미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학생수행평가기준(SPC)

➤ 학생수행평가기준 주요 개정안 – 자료 page 11~

	KAAB 2010 SPC	KAAB 2012 SPC
성취도 수준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능력)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능력)
SPC 항목	37개	31개
	“인지한다” 항목 2개	“인지한다” 항목 삭제
삭제/병합 항목	SPC 02. 도서작성 및 발표능력 SPC 03. 지도력 SPC 14. 협력작업 SPC 22. 기술도서 작성 SPC 3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SPC 35. 실무관련 도서	SPC 02. 삭제 SPC 03. 인지항목 삭제 및 대체 SPC 14. 주요관점으로 대체 SPC 22. 종합설계로 통합 SPC 33. 주요관점으로 대체 SPC 35. 인지항목 삭제 및 대체
SPC 해제	학생수행평가기준 해제	경직된 해제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제의 전면보완 또는 삭제

감사합니다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